

제28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(2026. 9. 10.)에서 의결된
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26년 9월 10일

화순군의회 의장 김 석 봉



화순군의회 규칙 제68호

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의회행정팀·의사운영팀·정책지원팀을 두고 각 팀장은 지방
행정주사로 한다”를 “의회행정팀·의사운영팀·정책지원팀·의회지원팀을 둔다”로
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회행정팀장·의사운영팀장·정책지원팀장”을 “의회
행정팀장·의사운영팀장·정책지원팀장·의회지원팀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